

한국모태펀드 2019년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7,980억원 이내 (혁신모험 2,000억원, 중진 5,320억원, 엔젤 360억원, 지방 300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으로 창업자·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19년 2월 27일(수), 14:00 / (기술사업화촉진 분야) 3월 6일(수) 14:00 · 2019년 4월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잔여 출자예산 및 사업 추진 일정 에 따라 매달 사업을 변경 공고할 수 있음, 단 선정(심의) 시기는 익월 출자사업 일정으로 연기할 수 있음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회(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 본 출자사업 이외 엔젤모펀드 출자사업(200억원 출자, 334억원 결성목표) 및 해외VC글로벌펀드 출자사업(1,000억원 출자, 2,500억원 결성목표)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참조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단, 기술사업화촉진 분야는 별도 공고된 교육계정 대학창업 분야와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에 명시된 조합 형태는 모두 가능하되 개인투자조합은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펀드는 증액 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Ⅲ. 주요 출자 조건을 참조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혁신 모험	창업초기	일반	800~1,200	1,333~2,000	60%
루키 ^{주1)}			800~1,200	1,333~2,000	60%	○
소계		2,000	3,333			
중 진	민간제안 ^{주2,3)}		3,100	9,333	30%	
	소셜임팩트	일반	250~450	357~643	70%	○
		루키 ^{주1)}	250~450	357~643	70%	○
		소계	700	1,000	70%	
	여성기업		120	200	60%	○
	M&A		1,200	3,000	40%	
	LP 지분유동화		200	500	40%	
	소계		5,320	14,033		
엔젤	기술사업화 촉진	1유형 ^{주4)}	108	180	60%	○
		2유형 ^{주5)}	72	120		
	엔젤세컨더리		180	300	60%	○
지방	지방기업		300	500	60%	○
합 계			7,980 이내	18,466 이상		

주1) 다음 ①~④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운용사가 대상

- 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 ② 등록(설립) 3년 이내인 창업투자회사
- ③ 운용 중인(해산총회 이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 억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
- ④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의 경우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하는 운용사

주2) 다음 ①~③을 주목적투자대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중점지원으로 인정하며 모태펀드 출자 예산 및 최대 출자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

구분	출자예산	최대출자비율
① 혁신모험계정의 창업초기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제안사 신청에 따름	30%
② 지방계정의 지방기업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③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구축하는 기업에 S/W 또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	600억원 내외	60%

주3) KVF결성목적으로 모태펀드 소액출자 가능(10억원 이내)

주4)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 대상, 적격 자조합 부족 시 2유형으로 선정 가능

주5)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운용사 대상, 적격 자조합 부족 시 1유형으로 선정 가능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혁신 모험	창업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또한 모태펀드가 정한 최소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중진	민간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가 기존에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 또는 정부대책자료* 등 정책목적성이 명확한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하며 주목적 투자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 -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자체가 출자하고, 지방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②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③ 일자리 창출 계획·목표를 제안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④ (스마트 공장 투자 펀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 S/W 또는 설비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 스마트 공장 : 중소전체 생산 과정(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수요자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며, 최소비용으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공장 **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신성장정책금융센터, 붙임파일 참조)등을 참고하여 공급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운용사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단, 약정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모태펀드 출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소셜임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 *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펀드 운용전략을 자율적으로 제안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UN SDGs : '15.9월 유엔 총회(Summit)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p> </div>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p>② 순수 비영리 조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사회통합</th> <th style="width: 20%;">사회문제(필요)</th> <th style="width: 20%;">공동체(공공)</th> <th style="width: 20%;">환경/생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업 분야</td> <td>①취약계층 포용</td> <td>①교육/저출산</td> <td>①공공장소 활용</td> <td>①수질과 위생</td> </tr> <tr> <td>②불평등 축소</td> <td>②건강과 웰빙</td> <td>②공동체와 지역 발전</td> <td>②공해와 오염 개선</td> </tr> <tr> <td>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td> <td>③고용/일자리</td> <td>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td> <td>③기후변화</td> </tr> <tr> <td></td> <td>④주택/주거</td> <td></td> <td>④청정에너지 등</td> </tr> <tr> <td></td> <td>⑤문화 등</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사전 또는 사후 평가할 수 있음</p>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취약계층 포용	①교육/저출산	①공공장소 활용	①수질과 위생	②불평등 축소	②건강과 웰빙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③고용/일자리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③기후변화		④주택/주거		④청정에너지 등		⑤문화 등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취약계층 포용	①교육/저출산	①공공장소 활용	①수질과 위생																								
	②불평등 축소	②건강과 웰빙	②공동체와 지역 발전	②공해와 오염 개선																								
	③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③고용/일자리	③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③기후변화																								
		④주택/주거		④청정에너지 등																								
		⑤문화 등																										
	여성기업	<p>○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p> <p>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 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 기되어 있는 경우 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 인증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⑤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p>																										
	M&A	<p>○ M&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주주,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③ 대표이사 선임, ④ 투자한 투자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여 상기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p>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약정총액의 40% 이내에서 가능</p>																										
	LP 지분유동화^{주)}	<p>○ 중소·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등의 인수 또는 벤처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벤처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p>																										
엔젤	기술사업화촉진	<p>○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건당 투자한도 5억원)</p> <p>① 정부(모든 부처)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결과 성공 공문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②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문 시행일 기준</p>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엔젤세컨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③에 해당하는 투자 대상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①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CB, BW 포함)에 투자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 ② 엔젤투자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구주 ③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최초로 신주(CB, BW포함) 투자를 유치한 창업초기기업**의 기존 주주인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구주 ④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주. 단, 약정총액의 10% 이내 <p>* 투자대상기업의 임직원,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법인(단,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함) 및 엔젤투자매칭펀드</p> <p>** 투자 당시 창업지원법 상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p>
지방	지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주) 세컨더리펀드 특화 전문운용사로서 비전과 이해상충방지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 의무

4. 기타 사항

*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 또는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의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형태의 운용사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유형	업무집행조합원	법적 근거	분야별 신청 유형	
			소셜 임팩트	기술 사업화촉진
개인	“전문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	○	
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고시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 단, 액셀러레이터(겸영, Co-GP 포함)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하여야 함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는 [별첨]을 적용하며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개인투자 조합 제안)는 선정 배제 등의 요건만 [별첨]을 적용(선정 우대기준은 하기 표 참조)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중진 ^①	엔젤	지방	혁신 모험
창업초기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한정)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	○	○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출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	○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지역 금융 기관 등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출자 참여규모에 따라 차등우대)	○	○	○	○
본점 또는 지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지원)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	○	○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연구소 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②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제안사가 소셜임팩트 분야에 투자실적이 있거나 소셜임팩트 분야에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③	○			
제안사가 운용 중인 최근 5년('14~'18)간 결성한 펀드의 투자금액 중 창업초기 기업 투자비율이 일정 이상일 때, 단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주목적이거나 영화·문화 투자가 주목적인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	○		○	○
제안사가 선도투자 ^④ 이후 후속투자 ^⑤ 한 실적이 있는 경우	○	○	○	○

① 중진계정 민간제안 중 KVF결성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② 중진계정 중 민간제안 분야에만 적용

③ 중진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만 적용

④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벤처펀드를 통해 신주(CB, BW 등 포함) 방식으로 최초 투자 (복수 운용사 투자 시 타 운용사의 최초 투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투자까지 인정)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⑤ 신주(CB, BW 등 포함) 방식으로 투자하되 선도투자와 동일한 라운드의 투자는 인정하지 않음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 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 단, 중진계정의 민간제한분야 내 「KVF결성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상기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업무정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III.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운용사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 <증진·엔젤(엔젤세컨더리분야)·혁신모험계정>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방안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48 891 1401 1227"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th> </tr>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3">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 <증진계정 민간제안 분야에서 지방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엔젤(기술사업화촉진분야)·지방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중 운용사가 선택하여 제안. ① 모든 민간출자자*에 대한 우선손실충당을 민간출자자 약정액의 10% 이하 적용(우선수익배분은 미적용), ② 우선손실충당을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초과 20% 한도 내 적용하며 우선수익배분 조건은 상기 표에서 ③ 조건을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 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항 목	내 용
<p>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펀드에서 증액 출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자분야와 주목적 투자대상과 투자의무 비율은 공고문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규약에 변경내용 추가(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40% 이내) ○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추가 제출(조합 규약(안),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p>*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p>
<p>출자금 납입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단,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는 수시납(capital call)만 가능)
<p>자조합 존속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5년 이상, 납입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
<p>관리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중진(창업초기기업·지방기업투자·스마트공장 이외 목적의 민간제안·M&A·LP지분 유동화 분야 제외)·혁신모험·엔젤(엔젤세컨더리분야)·지방계정 신청 운용사 및 지역 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p>*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p>*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p>
<p>기준수익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민간제안·M&A·LP지분유동화 분야 제외)·엔젤계정 : 0%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단 모태펀드 콜옵션을 부여할 경우 미적용 ○ 중진계정 민간제안·M&A·LP지분유동화 분야, 지방계정, 혁신모험계정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단 모태펀드 콜옵션을 부여할 경우 미적용
<p>성과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항 목	내 용												
	<p>*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p>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계정 M&A·LP지분유동화 분야와 엔젤계정 이외 모두 적용)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중진계정 M&A·LP지분유동화 분야와 엔젤계정 이외 모두 적용)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신주 보통주 투자 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5%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72 786 1331 98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td> </tr> </table> ○ (중진계정 M&A·LP지분유동화 분야와 엔젤계정, 혁신모형계정 창업초기분야 외 모두 적용)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엔젤계정·지방계정 이외 모두 적용) 전체 투자금액 대비 지방기업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약정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연구소 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여 선정 시 우대받은 운용사가 연구소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약정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초과수익의 15%) ○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분야) 지방기업 투자금액이 약정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 투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 및 지급률은 추후 공지 ○ (중진계정 M&A분야·LP 지분유동화 분야, 엔젤계정 이외 모두 적용) 전체 회수금액 중 M&A* 방식으로 회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72 1733 1331 188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회수 비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과보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td> </tr> </tbody> </table> <p>* 투자기업 인수가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 주주가 되었거나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했거나 ③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만 인정. 단 단독일 경우 전략적 투자자일 것. 그리고 SPAC 등에 매각하는 경우 본 인센티브 산정에서 M&A회수로 불인정</p>	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①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②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5% ×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항 목	내 용						
	<p>※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중진계정 민간제안은 특별히 인센티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안한 주목적 분야가 금번 출자사업에 있다면 해당 분야 추가인센티브 적용사항에 따름 (예시 : 중진계정 민간제안으로 지방기업투자를 제안할 경우 지방계정 지방기업투자의 추가인센티브 사항 적용)</p> <p>※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p>모태펀드 콜업선 부여</p>	<p>○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유한 책임조합원에게 콜업선 부여 가능.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p> <p>* 적용대상 및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48 891 1417 1115"> <thead> <tr> <th data-bbox="448 891 1193 936">분야</th> <th data-bbox="1193 891 1417 936">콜업선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8 936 1193 1037">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여성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 (엔젤계정) 엔젤세컨더리 (지방계정) 지방기업 </td> <td data-bbox="1193 936 1417 1037">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td> </tr> <tr> <td data-bbox="448 1037 1193 1115"> (중진계정) 민간제안(스마트공장)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td> <td data-bbox="1193 1037 1417 1115">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td> </tr> </tbody> </table> <p>* 행사 가격 :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p> <div data-bbox="483 1178 1281 122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 </div> <p>* 행사 기간 : 존속기간 7년 미만일 때 결성일로부터 3년, 존속기간 7년 이상일 때 결성일로부터 4년. 단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분야는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함.</p> <p>* 유한책임조합원 매수권리는 행사시점 당시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함</p> <p>* 중진계정 민간제안의 경우 제안하는 주목적 분야가 금번 출자사업에 있을 경우, 해당 분야 콜업선 부여 적용사항에 따름 (예시 : 중진계정 민간제안으로 지방기업투자를 제안할 경우 지방계정 지방기업투자의 콜업선 부여 사항 적용)</p> <p>* 운용사 제안 후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분야	콜업선 한도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여성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 (엔젤계정) 엔젤세컨더리 (지방계정) 지방기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중진계정) 민간제안(스마트공장)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분야	콜업선 한도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여성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 (엔젤계정) 엔젤세컨더리 (지방계정) 지방기업	모태펀드 출자지분 50%						
(중진계정) 민간제안(스마트공장)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모태펀드 출자지분 20%						
<p>수탁회사</p>	<p>○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p> <p>○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p> <p>○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p>						
<p>회계감사인</p>	<p>○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p>						
<p>ERP</p>	<p>○ ERP 사용 의무화</p>						

항 목	내 용																												
<p>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기구 (엔젤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 외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 <table border="1" data-bbox="464 405 1401 1167"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1f2;">외부전문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td> </tr> </tbody> </table> ○ 조합 별 업무집행조합원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 가능 ○ 투자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역할(참관인 또는 의결권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한국모태펀드(특별조합원)는 투자의사결정기구에 참관인으로 참석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직원은 외부전문가로 참석이 불가하며, 투자의사결정기구가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타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증빙(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본 항목은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한 중진계정 소셜임팩트 분야 운용사에도 적용)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외부전문가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																											
	2	주권상장법인의 등기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한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현직 포함)																											
	5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제 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7	회계사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8	세무사법 제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																											
	9	변리사법 제 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변리사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12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자																											
	13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항 목	내 용
	<p>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p> <p>*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p> <p>②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p> <p>③ (엔젤계정)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p> <p>④ (엔젤계정) 후행투자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가결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p> <p>○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단 개인투자조합으로 결성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p> <p>○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p>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 소셜임팩트 분야 제안사 및 민간 제안 분야 중 스마트 공장 투자 펀드를 제안한 경우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 전문가 자문단 PT를 실시하며 이후 자문단 의견을 수렴, 2차 심의 이전에 운용사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 투자분야를 수정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9. 2. 27.(수)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9. 3. 6.(수) (기술사업화촉진분야)		
'19.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9. 7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기술사업화촉진분야는 2개월 이내)

- 최종선정결과 발표 이후 잔여 출자예산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매월 사업을 변경 공고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9. 2. 27.(수) 14:00 / (기술사업화촉진분야) 3. 6.(수)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9. 2. 27.(수) 10:00 / (기술사업화촉진분야) 3. 6.(수)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2. 11.(월) 14:30 / (기술사업화촉진분야) 2019. 2. 11.(월) 16: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 적용)

- 신규 운용 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후 조합 결성 이전에 입사를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단,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조합 결성 후, 1년 이내에 대표펀드매니저(운용인력 포함)가 이직 등 변경 시 조기해산의 사유가 되며, 1년 초과 시 대표펀드매니저(운용인력 포함)의 변경은 내부 기준 규약 등에 따라 관리보수를 삭감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엔젤투자본부
(엔젤계정 : 엔젤투자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중진, 혁신모험, 지방 계정 : 02-2156-2060, fof@k-vic.co.kr
 - 나. 엔젤 계정 : 02-2156-2030, angelfof@k-vic.co.kr
 - 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2. 1.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을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자 이외의 운용사, 신설 및 소형(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 원 미만) 창투자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엔젤계정 기술사업화촉진 분야]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주주 및 경영진	대주주, 등기 임원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재무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투자실적/성과	비상장(창업자, 벤처기업) 신주 투자, 투자 회수(exit) 성과, 후속투자 유치 실적
	준법성	운용사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소송, 계약 위반, 민원 발생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투자, 창업, 산업계 경력 등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핵심인력의 팀웍, 근속기간,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여부
가점 등	공고문 [별첨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별첨]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순번	가점 항목
1	결성 목표액 초과 출자자 모집 제안한 경우 (미충족시 선정 취소사유 해당)
2	주목적 투자비율 증대방안 제시 (규약 반영)
3	지방소재(서울.인천.경기 외) 기업 투자비율 제시 (규약 반영)
4	후속 투자 관련 VC 등과 MOU 체결
5	대표펀드매니저의 창업지원, 엔젤투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급 이상의 표창 등 제시
6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험 보유
7	자체 보육시설(Business Incubator)을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3) 항목은 규약에 반영하며, 1) 항목 충족에 실패할 경우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출자자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대주주, 출자자 등의 확인서(독립적 의사결정 보장 관련)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포함)
- 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투자 경력(민간, 대학 등에서 현금·현물 투자 경력 포괄적으로 인정) 1년 이상인 전담인력이 1인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운용사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기타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 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달성 기준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단,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기타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기타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최초 상실일 기준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형사상 피소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형사상 피·기소된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대표펀드매니저가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사. 결성목표액 초과 출자자 모집 제안 관련 가점을 받고 최종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점 획득을 위해 제시한 출자자 모집 요건 달성에 실패한 경우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나.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로 도래 하는 출자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조합 출자 제한 가능